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17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과 『같은법 시행령』 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하고
 -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
 - 청사 및 군수 집무실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
-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·보존, 처분에 적정을 기하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